

2020년

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

**몽골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한  
몽골 환자 사후관리  
사업 공모안내서**

2020. 1.

# 목 차

<b>I. 사업개요</b> .....	<b>1</b>
1. 추진배경 및 필요성	
2. 사업 목적	
3.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	
4. 사업 내용	
5.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	
6. 사업추진절차	
<b>II. 사업 내용</b> .....	<b>6</b>
1. 지원 개요	
2. 참가 자격	
3. 지원조건 및 제외대상	
4.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	
5. 사업 수행내용	
<b>III. 선정평가</b> .....	<b>11</b>
1. 평가방법 및 절차	
2. 평가기준	
3. 평가결과 종합	
<b>IV. 사업계획서 작성지침</b> .....	<b>14</b>
1.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	
2.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	
3.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및 방법	
4. 제출서류	

# I . 사업개요

## 1. 추진 배경 및 근거(관련 규정 등)

- 韓복지부-蒙보건부간 체결된 ‘정보통신기술(ICT)기반 의료기술 협력 (Arrang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T based health technology between MOHW and MOH(Mongila))’ MOU\*(‘16.7) 후속 조치 지원을 근거로 ‘17년 몽골 사후관리센터 구축 및 시범운영 수행

\* 제4조 사후관리서비스: 양측은 한국에서 치료받은 몽골인 환자를 위하여 e-Health를 사용한 사후관리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한다. 한국측은 몽골 내 사후관리 서비스의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-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(외국인환자 사전·사후관리)
- 한국 복지부- 몽골 보건체육부 간 ICT기반 의료기술 협력에 관한 MOU 체결(‘16.7)

## 2. 사업 추진 필요성

- ‘18년 몽골환자 사후관리 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산업의 성장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 가속화에 따른 한국 의료 경쟁력 및 환자 안전성 제고
  - 몽골 현지에서 사후관리서비스(Post-care service) 제공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
  - 의료관광 목적의 몽골환자 유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주요 질환별\* 맞춤형 사후관리 제공을 통한 환자 안전성 제고

※ '17년 방한 몽골환자의 주요 질환은 소화계통(1,522명), 비뇨생식계통(1,507명), 근골격계(1,502명), 신생물(1,054명), 호흡계통(934명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- 위와 같은 시범사업 및 '18~'19년도 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'20년 몽골 사후관리사업 추진 필요
  -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타국가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
  - 몽골 내 참여 국립병원 확대, 한-몽 의료기관 간 교류 확대 도모

### 3. 사업목적

- 한-몽 양국 의료기관의 몽골환자 사후관리 참여 확대를 통한 몽골 환자의 한국의료 이용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
- 한국형 ICT기반 의료시스템을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의 해외 도입 성공사례 발굴·확산

### 4. 사업 내용

#### □ 지원 대상

- (Track 1) 연간 몽골환자 유치실적이 80명 이상인 의료기관
- (Track 2) 몽골환자 유치실적과 무관하게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

#### < 의료기관 요건 >

- 「의료법」 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(단, 조산원 제외)
- 「의료법」 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
- 「의료법」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
-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

#### □ 주요 내용

- (사후관리 실시) 한국에서 진료 받고 귀국한 몽골환자 대상 몽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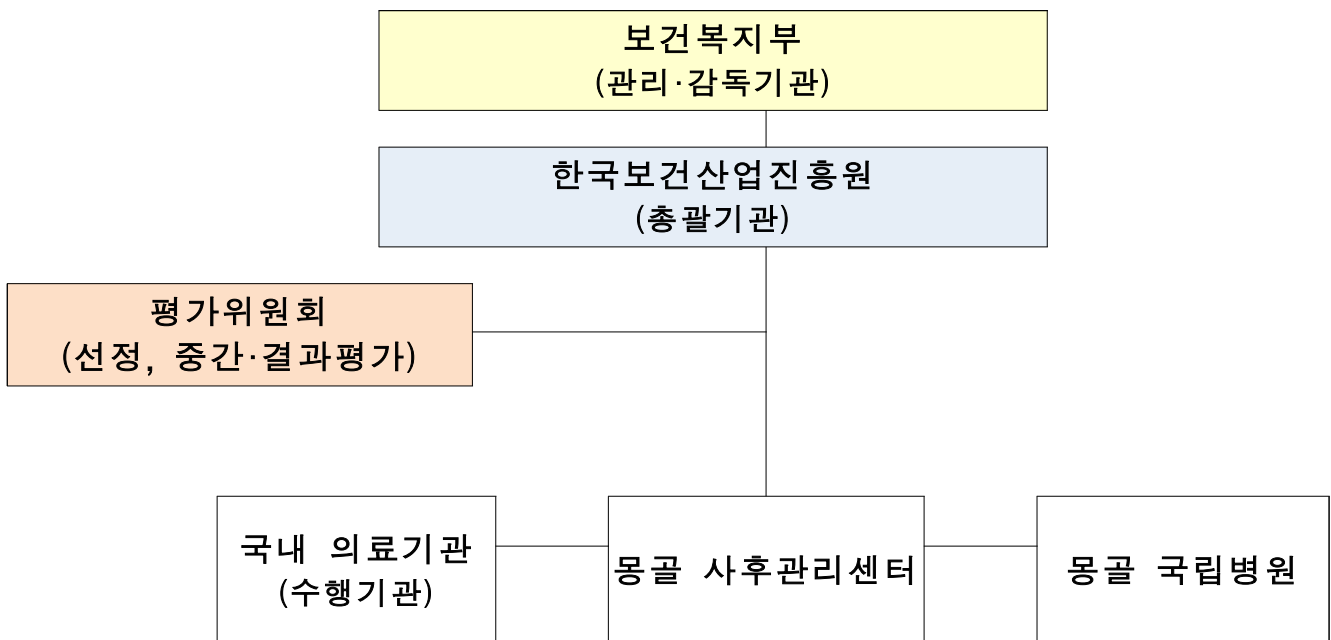
## 사후관리센터 등 몽골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사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실시

\* 현재 몽골 국립 제1중앙병원 내 「몽골 사후관리센터」 운영 중이며, 몽골 국립 제2중앙병원 등 사업 참여 몽골 국립 의료기관 확대 예정

- (사후관리 활성화) 정기 협의체를 통해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개선점 도출, 효과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 제안 등
- (사후관리 홍보) 진흥원 주최 현지 홍보회 참여 및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사후관리 확대 도모

## 5.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

### □ 추진체계



□ 구성 및 주요 역할

구 분	주 요 업 무
보건복지부 (관리·감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몽골 사후관리사업 정책 수립 및 예산 승인</li> <li>▪ 성과관리 및 결과 확인 등</li> <li>▪ 몽골 보건부와 협력체계 구축</li> </ul>
한국보건산업 진흥원 (사업 수행 총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몽골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한 몽골환자 사후관리 사업 추진 및 관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</li> <li>· 사업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</li> <li>· 사후관리 수행 실적 및 사업비 실적 관리</li> <li>· 사후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관리감독</li> </ul> </li> <li>▪ 몽골 국립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</li> <li>▪ 몽골 보건부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</li> </ul>
의료기관 (수행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한국에서 진료 받고 귀국한 몽골환자 대상 몽골 의료기관과 원격협진을 통한 사후관리 진행 및 만족도 조사 실시</li> <li>▪ 정기 협의체 참여 및 사후관리사업 활성화방안 제안</li> <li>▪ 진흥원 주최 몽골 현지 사후관리 홍보회 참여</li> <li>▪ 우수 사후관리 사례에 대한 홍보 영상 제작</li> <li>▪ 추진사업 실적, 진행현황 중간보고 및 최종 사업결과 보고</li> <li>▪ 국가보조금 지원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</li> </ul>

\* ICT업체 : 몽골 사후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, 기능개선, 운영·기술지원을 수행

## 6. 사업추진절차

단 계	수 행 절 차	일정(안)
사업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 일체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	1월
↓		
참가신청서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수행기관, 과제책임자 자격, 참여 제한, 제출서류 등 검토</li> </ul> </li> <li>* 서류검토 후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평가대상으로 선정</li> </ul>	2월
↓		
수행기관 선정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행기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 및 평가</li> <li>-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범위 협의 및 조정</li> </ul> </li> </ul>	2월
↓		
협약 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협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행기관은 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협약체결</li> </ul> </li> <li>■ 선금금 지급(2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괄기관은 협약체결 완료 후 선금금 70%(국고보조금) 지급</li> </ul> </li> </ul>	2월
↓		
사업착수 및 사업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몽골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한 몽골 사후관리사업 추진</li> <li>*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착수보고 예정</li> </ul>	2월
↓		
중간평가 및 잔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(프로젝트) 추진현황 및 실적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행기관은 총괄기관이 정한 보고양식(중간실적보고서 및 중간정산보고서 등)을 제출하고, 평가위원회는 그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(프로젝트)의 “계속”진행 또는 사업“중단”을 결정함</li> </ul> </li> <li>■ 사업비 조정 및 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위원회는 보고양식(중간실적보고서 등)을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비 조정을 할 수 있으며, 평가결과가 “계속”진행인 경우 조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 계속 진행 또는 사업“중단”인 경우 사업비 환수</li> </ul> </li> <li>■ 사업비 잔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괄기관은 중간평가결과 “계속” 진행 경우, 잔액 30%(국고보조금) 지급</li> </ul> </li> </ul>	6월
↓		
결과평가 및 정산서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산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실시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회계법인에 정산서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■ 사업(프로젝트)추진 최종 실적검토 및 보고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행기관은 총괄기관이 정한 결과보고양식(결과보고 등)을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■ 사업비 조정 및 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위원회는 보고양식(최종결과보고서 등)을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사업“완료”인 경우 최종결과평가를 기준으로 사업 완료 또는 사업“보완”인 경우 사업 결과 보완 후 사업완료, 성과“미달성”인 경우 지원금 환수(잔액 또는 일부), 차년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	11월

## II. 사업 내용

### 1. 지원 개요

구분	주요 내용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의료법」 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(단, 조산원 제외)</li> <li>○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</li> <li>○ (Track1) 몽골환자 연간 유치실적 80명 이상 의료기관, (Track2) 몽골환자 유치실적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</li> </ul>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Track1) 사업 참여기관 당 최대 20백만원 지원</li> <li>○ (Track2) 사업 참여기관 당 최대 12백만원 지원</li> <li>* 서류심사 단계에서 사업내용, 예산 적정성 평가 실시하여 지원금 조정 가능</li> </ul>
사업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년도 사업(협약체결일~2020년 11월 10일)</li> </ul>
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기관은 자기부담금(총사업비의 30%이상) 부담</li> <li>*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(현물과 현금)을 합한 금액으로, 현물과 현금의 비율은 지원기관의 자율 (예시)143백만원(총사업비)=100백만원(국고보조금)+43백만원(자기부담금)</li> </ul>

### 2. 지원조건 및 제외대상

-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,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정취소
- 불성실 납세 기관(총책임자(기관)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 제출)

### 3.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

#### ○ (지원규모)

- (Track1) 사업 참여기관 당 최대 20백만원 지원

- \* 사후관리 30건 이상 수행을 조건으로, 사후관리 실시비용(자문료)은 기관당 3백만원까지 지원 예정



- (Track2) 사업 참여기관 당 최대 12백만원 지원
  - \* (Track2) 사후관리 실시비용(자문료)은 건당 10만원까지 지원
- 서류심사 및 최종 협상 단계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지원 규모 조정 가능
- (사업기간) 단년도 사업(협약체결일~2019년 11월 10일)

## 5. 사업 수행내용

### ① Track 1

- (사후관리 실시) 한국에서 진료 받고 귀국한 몽골환자 대상 몽골 사후관리센터 등 몽골 의료기관\*의 의료진과 사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사후관리 30건 이상\*\* 실시
  - \* 현재 몽골 국립 제1중앙병원 내 「몽골 사후관리센터」 운영 중이며, 몽골 국립 제2병원 등 사업 참여 몽골 국립 의료기관 확대 계획
  - \*\* 건강검진 결과(이상소견 있는 경우)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체 수행 건수의 1/3 이하에 대해서만 건수로 인정함
- (만족도 조사) 사후관리 환자대상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

#### <원격협진 화상시스템 활용 필요 장비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웹캠 사양 : HD 720p 지원,USB 타입</li> <li>• PC 사양 : CPU i5 이상 (3 GHz 이상 ), Memory : 4GB이상, 듀얼모니터 사용</li> <li>• 스피커 : 스피커폰 또는 헤드셋(USB타입 권장)</li> </ul>			
<b>본체 (선택)</b>	<b>USB카메라 (선택)</b>	<b>USB헤드셋/스피커폰 (선택)</b>	
 <b>PC/노트북</b> - 기존 PC 활용시	 <b>절약형</b> - HD 화질 - 간편 설치	 <b>Mono/Stereo 형</b> - 1인용 - 볼륨조절/음소거	+
+	 <b>실속형</b> - HD 화질 - 360도 회전(수동) - 오토포커스	 <b>소형</b> - 1~4인용 - 볼륨조절/음소거	+
	 <b>고급형</b> - Full HD 화질 - 오토포커스	 (Additional headset options)	
	 <b>최고급형</b> - Full HD 화질 - 오토포커스 - PTZ (리모콘제공)	 (Additional headset options)	

- **(사후관리 활성화)** 정기 협의체를 통해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개선점 도출, 효과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 제안 등
  - \* 향후 정부지원 종료 시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모델 개선 방안, 타 국가 환자 대상으로 확장 의견 제시 등
- **(사후관리 홍보)** 진흥원 주최 현지 홍보회 참여 및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사후관리 확대 도모
  - **(홍보영상 제작)** 우수 사후관리 사례의 홍보 영상 제작
    - \* 고화질(HD) 영상 촬영 권장하며, 사업 종료 시 영상 소스와 함께 제출
- **(사후관리 실적 보고)**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\*에 의거하여 **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양식**(별지서식 참고)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(분기별)
  - \*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참조

## ② Track 2

- **(사후관리 실시)** 한국에서 진료받고 귀국한 몽골환자 대상 **몽골 사후관리센터 등 몽골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사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사후관리 실시**
  - \* 현재 몽골 국립 제1중앙병원 내 「몽골 사후관리센터」 운영 중이며, 몽골 국립 제2병원 등 사업 참여 몽골 국립 의료기관 확대 계획
- **(만족도 조사)** 사후관리 환자대상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
  - ※원격협진 화상시스템 활용 필요 장비는 Track 1 필요 장비(7쪽)와 동일
- **(사후관리 실적 보고)**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\*에 의거하여 **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양식**(별지서식 참고)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(분기별)
  - \*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

- **(사후관리 활성화)** 정기 협의체를 통해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개선점 도출, 효과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 제안 등
  - \* 향후 정부지원 종료 시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모델 개선 방안, 타 국가 환자 대상으로 확장 의견 제시 등
- **(사후관리 홍보)** 진흥원 주최 현지 홍보회 참여 및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사후관리 확대 도모
  - **(홍보영상 제작)** 우수 사후관리 사례의 홍보 영상 제작
    - \* 고화질(HD) 영상 촬영 권장하며, 사업 종료 시 영상 소스와 함께 제출

### Ⅲ. 선정평가

#### 1. 평가방법 및 절차

- (기본방침) 공모를 통하여 많은 지원기관의 참여기회 제공 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적용, 평가에 의한 지원기관 선정
- (평가방법) 서류검토 및 서면평가
- (평가절차)

구분	서류검토	서면평가	평가·선정	사업협약
내용	· 사업수행기관 및 과제책임자 자격 · 참여제한 · 제출서류 · 예산적정성 등	⇒ 사업계획서 평가	⇒ 종합적 평가결과 취합 및 선정	⇒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협약
주체	KHIDI	지원기관	평가위원회	KHIDI, 선정기관

- 사업수행기관 역량, 추진계획 타당성,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,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
- 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된 사업 내용 및 예산 변경(안)을 진흥원과 협의하여 협약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
- 협약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결 예정이며,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 착수보고를 실시하며,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사업 착수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

#### 2. 평가기준

-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의 타당성, 수행기관의 역량 및 의지, 정착 가능성 등을 충실히 제시해야 함
- 사업 선정 평가 시 평가위원회로부터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하며, 협상을 통해 최종참여 여부 결정

## <Track1 의료기관>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
사업 이해도	○ 사업 목표 이해와 추진방향 설정의 적절성	10
역량 및 의지	○ 사업 참여인력 전문성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 ○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경험 및 노하우 보유 정도 ○ 사후관리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 방안의 적절성 * 내용과 구성의 적절성 및 목표 사후관리 특화질환 방향성 등 ○ 도전적인 사후관리 목표 제시	15
사업계획의 적절성	○ 사업 계획의 타당성 *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, 일정계획 및 일정관리방안 등 ○ 사업수행방안의 구체성, 이슈사항 대처방안 등 * 사후관리 참여 가능한 몽골환자 Pool 확보 방안 등 ○ 사업 지원체계의 우수성 * 참여인력 투입 계획, 인력운용 방안, 업무분담의 적절성 등	30
예산계획의 적절성	○ 예산 사용계획의 타당성 및 세부사업비 구성의 적절성	10
기관 적합성	○ 몽골환자 유치 실적*	10
	○ 몽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보유 정도	5
지속 가능성	○ 사업기간 이후 사후관리시스템 이용 계획 ○ 사후관리 시설, 장비,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	20
<b>계</b>		100

\* 몽골환자 유치 실적 배점

	몽골환자 유치 실적(건)	점수
1	80 ~ 90	4
2	90 ~ 100	6
3	100 ~ 120	8
4	121 이상	10

## <Track2 의료기관>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
사업 이해도	○ 사업 목표 이해와 추진방향 설정의 적절성	10
역량 및 의지	○ 사업 참여인력 전문성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 ○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경험 및 노하우 보유 정도 ○ 사후관리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 방안의 적절성 * 내용과 구성의 적절성 및 목표 사후관리 특화질향 방향성 등 ○ 도전적인 사후관리 목표 제시	20
사업계획의 적절성	○ 사업 계획의 타당성 *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, 일정계획 및 일정관리방안 등 ○ 사업수행방안의 구체성, 이슈사항 대처방안 등 * 사후관리 참여 가능한 몽골환자 Pool 확보 방안 등 ○ 사업 지원체계의 우수성 * 참여인력 투입 계획, 인력운용 방안, 업무분담의 적절성 등	30
예산계획의 적절성	○ 예산 사용계획의 타당성 및 세부사업비 구성의 적절성	10
기관 적합성	○ 몽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보유 정도	10
지속 가능성	○ 사업기간 이후 사후관리시스템 이용 계획 ○ 사후관리 시설, 장비,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	20
계		100

### 3. 평가결과 종합

- **(평가위원회 구성)** 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,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과반 이상 (2/3 이상) 포함
- **(중점 평가내용)** 본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'평가 기준' 각 항목 등을 고루 평가
- **(평가점수 산정)**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(각각 1명), 나머지 점수의 평균 점수를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획득점수로 산출

## IV. 사업계획서 작성지침

### 1.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

-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(www.khidi.or.kr, 알림마당→사업광고)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

#### 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광고란】



### 2.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

#### □ 사업계획서의 효력

- 총괄기관(KHIDI)이 필요시 공모 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총괄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협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

## □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

- 제시된 사업계획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되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자유양식으로 추가 가능
-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,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,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람
-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,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, 도식적(Schematic)으로 작성하시기 바람
- 계획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, 평가항목 조건표를 본문 첫 페이지에 배치함
- 계획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,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
-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중,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명시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- 계획서의 내용은 “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”해야 하며, 예를 들어, 사용가능하다, 할 수 있다,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
- A4지 제본이나 링제본, 바인더 등의 사용을 권고함

- |  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(50장) 이내로 한글(HWP)작성 권고</li><li>-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권고</li><li>- 양장제본(10부)</li></ul> |
|---|



-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발표자료를 준비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진흥원에서 발표자료 제출기한 사전 통보
- 제안서 발표 시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활용이 가능하며, 동영상을 활용할 경우 역시 사업신청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(동영상 시간은 발표시간에 포함됨)

- 과제 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(연구원, 연구장비, 사업비 등)은 과제목표 및 수행 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, 특히 사업비는 “2020년 몽골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한 몽골 사후관리사업 예산편성 기준”에 부합되게 계상해야 함
  - \* 외부회계기관 정산비용을 아래 기준에 따라 「운영비-일반수용비」에 편성하며, 중간정산을 위하여 위탁정산 표준수수료의 50%의 수수료를 추가하여 예산편성

### 【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】

(단위: 천원)

구 분 [정부출연금+민간부담금(현금)]	표준수수료	가산금		비고
5천만원 이하	440	○ 공동수행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		부가세 포함
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484	<b>수행기관 수</b>	<b>가산금</b>	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545	0개	없음	
3억원 이상 5억원 미만	654	1개	표준수수료의 10%	
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800	2개 이상	표준수수료(1개 기관 추가 시 마다)의 5%	
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	944			

-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총 9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되,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### □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, 미(未)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

-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
-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함
-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,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있음
-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,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 취소됨
  -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별첨(스캔 첨부, 원본은 발표평가 시 증명)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, 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과제의 수행결과물로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사업 수행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과제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그 소유권을 가짐
-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,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제출 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된 서류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

### 3.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및 방법

□ (접수기간) 2020. 1. 17(금) ~ 1. 31(금) 17:00까지

□ (접수방법)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

□ (접수처) 한국보건산업진흥원(유치사업팀)

○ 주 소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
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사업팀(4층)

○ 담당자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사업팀

이지수 연구원(jisool0316@khidi.or.kr, 043-713-8041)

□ (접수시 유의사항)

○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준수

### 4. 제출서류

① 참여공문 1부

② 사업계획서 10부(제출서류 및 원본 파일(CD, USB 등 전자매체 제출)

\*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제본형태로 제출하며, 제본형태는 접착제 제본, 좌측편철, 양면인쇄 권장

\* 전자매체(CD 및 USB)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제출서류 일체의 내용 수록

③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

④ 지원서약서

⑤ 공동수급협정서(필요시)

⑥ 대표자선임계(필요시)

⑦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(기관장) 정보활용 동의서

⑧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협약서

- ⑨ 자기부담현금 납입 협약서
- ⑩ 외부용역 과제계획서
- ⑪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⑫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(예정)확인서
- ⑬ 회계감사보고서/재무제표\*(최근 3년)
- ⑭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
- ⑮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
- ⑯ 외국인환자 유치업차 등록증

※ 제출공문(1부) 및 사업계획서(10부) 외, 제출서류는 별지서식 참조

※ 제출서류 외 추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을 시 제출 가능하며, 협약 체결 중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